



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관련 유의사항

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에 안내코자 게재하는 것이다(편집자 註).

I 배경

- 최근 일부 상장법인 등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함에도 1~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.

II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

-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발행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함.
- 다만,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2조에서 정하는 “공모발행방식”의 발행일 경우 그 발행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음.
 - 여기서 “공모발행방식”이라 함은 상법(§513의2)에 따라 주주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여 모집 하는 방식(주주배정방식)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(§84조의5)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식(일반공모방식)만을 의미함.

유의사항

- 상장법인 등이 소액공모 또는 해외증권을 통해 전환사채(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)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모발행방식 이외의 방식(제3자배정, 사모 등)의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하며,
 - 아울러 향후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.

〈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〉

- 원칙 : 1년 경과후
- 예외 : 1월 경과후
 - 주주배정방식
 - 일반공모방식

〈 참 고 〉

관 계 법 규

□ 증권거래법

- 제192조(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)
 -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

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.

1. ~ 4. 생략
5.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② 생략

□ 증권거래법시행령

○ 제84조의5(일반공모증자)

- ① 법 제189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”이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(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)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.

② 생략

○ 제84조의25(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)

- ① 법 제19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~5. 생략
 6. 전환사채권, 신주인수권부사채권,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~③ 생략

□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

○ 제60조(전환사채의 발행제한)

주권상장법인등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는 상법 제5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여 모집하거나 영 제84조의5제1항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(이하 이 절에서 “공모발행방식”이라한다)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.

1. 법 제19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(이하 “소수주주”라 한다)가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당해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
2. 소수주주가 법원에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·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·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

○ 제62조(전환금지기간)

주권상장법인등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
○ 제63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- ① 제60조, 제61조제1항, 제61조의2 및 제62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②~③ 생략